

Unemployed Workers Project Toolkit 실업급여 관련 안내서

Updated: May 2022

최종 업데이트: 2022 년 5월

<u>Table of Contents</u>

샘플 양식	oxdots
행정소송 신청 양식	3
재심신청 양식	
항소 공지 및 재판기록 요청 양식	6
${f Q}\&{f A}$: 실업급여 관련 행정판사의 행정소송	8
왜 행정소송이 필요합니까?	8
실업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의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	까?8
행정소송이 나의 실업급여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8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합니까?	
행정판사(ALJ)는 누구입니까?	9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9
행정소송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10
어떤 증인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10
행정소송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연기 또는 불참할 수 있습니까?	11
반드시 대면 참석을 해야 합니까?	Error! Bookmark not defined.2
행정소송에 무엇을 지참하거나 누구와 함께 참석해야 합니까?	Error! Bookmark not defined.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Error! Bookmark not defined.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장애 관련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Error! Bookmark not defined.
행정판사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에서 저의 권리는 무엇?	defined.3
행정소송 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Error! Bookmark not defined.
행정판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rror! Bookmark not defined.
판결에 항소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행정판사가 나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면, 상대측이 항소할 수 있	습니까?Error! Bookmark not defined.
항소위원회 결정 후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 행정소송 관련 5 가지 팁: 직접 변호	. Error! Bookmark not defined.6
영상 링크: 행정소송 준비하는 방법	22

실업급여 행정소송 및 항소와 관련된 용어	23
Sample Form	us 샘플 양식
Request a Hearing Form 행정소송 신청	양식
STATE OF NEW YORK UNEMPLOYMENT INSI DIVISION ADMINISTRATIVE LAW JUDGE SE 뉴욕주 실업급여 행정판사 담당부	
In the Matter of the Claim for Benefits Made By	NOTICE OF APPEARANCE
[신청인] 실업급여 신청 관련	&
	REQUEST FOR HEARING
	출석공지 및 행정소송 신청
disagree with the DOL Determination and would Please take notice, that the I,be sent to:	t my case before an Administrative Law Judge. I like to present my case before an impartial judge. request that copies of all notices and decisions 정소송을 신청합니다. 저는 노동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공정한 행정판사님께 관련 내용을 판결받고자 합니다. 저, [이년 요청드립니다. 	름],은/는 관련 공지 및 판결문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길
(Your address)(주소) Please note that I am not available onunavailability in the next 45 days). 저는(향후 45일 중 가능한 시간)에 행정소송에 참석	

Your name (본인 이름)

Dated (날짜):

Request to Reopen Matter Form 재심신청 양식

[DATE] [날짜]

Via Regular Mail and Facsimile to 우편 또는 팩스[Hearing Office Fax #] [팩스 번호]

ALJ 행정판사 [Name] [이름]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Board Administrative Law Judge Section 실업급여 항소위원회 행정판사부 [Use Hearing Office Address from Default Decision]

[불출석 결정문에 나온 소송 담당부처 주소]
RE: Request to Reopen and Notice of Appearance [Your Name]

재심 요청 및 출석 통지 관련 [본인 이름]

ALJ Case Number: 022-___

ALJ 소송번호: 022-___

Dear Administrative Law Judge [NAME of Last Judge], 친애하는 행정판사님께 [마지막 행정판사 이름],

I request to reopen ALJ Case Number 022-[_____]. I was previously unable to proceed with my hearing because [I did not have representation, or other reason if applicable.]

저는 ALJ 소송번호 022-[___]에 관한 재심을 요청합니다. 지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리인 부재, 또는 다른 관련 이유]입니다.

Please send all future correspondence regarding this matter to me at the address below.

추후 관련 내용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do not schedule the hearing on [insert any specific dates and times of unavailability over the next two months].

다음의 [향후 2달간 불가능한 날짜와 시간] 때에는 소송 기일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Sincerely,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Address] [이름/주소]

cc: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Board P.O. Box 15131 Albany, NY 12212-5126

Fax: (518) 402-6208 Tel: (518) 402-0205

Notice to Appeal Form and Request for a Transcript

항소 공지 양식 및 재판기록 요청 양식

(Date) (날짜)
Sent via facsimile to 팩스번호: 518-402-6208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Board
P.O. Box 15126
Albany, New York 12212-5126
NOTICE OF APPEAL AND TRANSCRIPT REQUEST

항소 공지 및 재판기록 요청
RE: Claimant

천구인
A.L.J. Case#: A.L.J. 소송 번호:
To Whom It May Concert

To Whom It May Concern:

담당자분께:

I am appealing ALJ Decision [No.___], which [INSERT SPECIFIC DETERMINATION] (If decision covers several issues and you are only appealing in part, note which issues you are appealing).

저는 ALJ 판결 [번호.___],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하는 합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항소하고자 하는 문제만 적시).

I request the production of a written transcript, the audio recording and the exhibits from the ALJ hearing(s). Please notify me when the transcript, audio recording and documents are ready and email the electronic copy to:__(email address) so I may prepare a brief. 지난 재판기록, 오디오 녹음, 증거 내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판기록, 오디오 녹음, 관련 서류가 준비되면 저의 재심 준비를 위해 다음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Due to the need for the transcript, I request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the brief until 20 days after the date we are notified that the transcript is ready, pursuant to 12 NYCRR § 463.1(f) (4).

재판기록 요청으로 인하여 재심관련 내용 제출 기한을, 12 NYCRR § 463.1(f)(4)에 의거, 재판기록이 준비된 후 20 일 이후로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lso reserve the right to submit a reply to any briefs, statements or documents submitted by another party to this appeal within 12 days after such materials are mailed to us, pursuant to 12 NYCRR § 463.1(f) (5).

저희는 또한, 12 NYCRR § 463.1(f)(5)에 의거, 상대측 관련 서면 답변 및 관련 서류 발송 12 일 이내로 저희의 답변 기회가 있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rely,	

[NAME] [이름]

Attachment: Notice of Decision, ALJ Case No. ____

Q&A: 실업급여 관련 행정판사 주재 행정소송 (2022 년 5 월 업데이트)

본 가이드는 2014 년 4 월자 뉴욕주 노동부 "실업급여 관련 행정판사 주재 행정청문회" 가이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고용주와 청구인은 실업급여법에 따라 노동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규정은 관련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문답 내용은 고용주들의 관련 절차 이해를 돕고자 소송 관련 자주 문의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행정소송이 필요합니까?

실업급여는 본의와 상관없이 고용을 상실한 고용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부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는 전/현직 고용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또는 고용주의 실업급여 부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노동부 결정에 대하여 공정한 행정판사 주재 행정소송을 아무 비용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인이 정규직 또는 계약직인 경우 모두 포함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의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업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노동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1. 청구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2.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파기한 경우
- 3. 청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인의 경험과 훈련에 적합한 대체 업무를 거부한 경우
- 4. 청구인이 완전히 고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
- 5. 청구인이 일할 준비나 의지가 없고 일하지 못하는 경우
- 6. 청구인이 고용될 수 없는 경우

행정소송이 나의 실업급여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고용주는 전직 고용인의 실업급여를 위해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청구인의 실업급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인에게 실업급여가 과잉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해에 해당

고용인의 비용 부담율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고용주들에게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실업급여 지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판사가 고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청구인(전직 고용인)에게 지급되던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고용주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노동부의 관련 정보 요청에 적시에 적합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합니까?

노동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뉴욕주 노동부, P.O. Box 5131, Albany, NY 12212-5131,에 서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는 노동부 결정 공지부터 30 일 이내로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청구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면, 고용주는 행정소송 신청시 실업급여 지급 반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날짜 등 사실 관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를 주장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적합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을 허가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판사(ALJ)는 누구입니까?

행정판사(ALJ)는 노동부로부터 독립적인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결정권자입니다. 행정판사는 행정소송을 주재하고, 선서된 증언 및 증거 서류를 받아들이고,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법을 적용하여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결정 및 고용주의 비용 부담과 관련된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청구인의 실업급여 지급 관련 행정소송

2022 년 5월부로 모든 행정소송은 전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공지에 행정판사가 전화할 날짜와 시간 및 전화번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신청인은 행정소송 공지를 검토하여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시작 최소 15분 전부터 전화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COVID-19 전과 2022 년 5월 이후 (미정)의 기간까지는 뉴욕시에서 청구인의 실업급여 지급 관련행정소송은 청구인의 근무지와 가장 가까운 UIAB 위치에서 진행됩니다. 업스테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주거지 근처 UIAB 위치에서 진행됩니다. 업스테이트 소송 위치에서 60분 이상

거리에 있거나 뉴욕시 소송 위치에서 90 분이상 거리에 있는 행정소송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화로 진행됩니다. UIAB 에서 일정 기간안에 행정소송 스케줄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면소송 대신 전화 소송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실업급여 비용 부담 관련 행정소송

COVID-19 전과 2022 년 5월 이후 (미정)의 기간까지는 고용주의 실업급여 비용 부담 관련행정소송은 고용주의 사업체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UIAB 위치에서 진행됩니다. 업스테이트 소송위치에서 60분 이상 거리에 있거나 뉴욕시 소송 위치에서 90분이상 거리에 있는 행정소송 신청인은일반적으로 전화로 진행됩니다. UIAB에서 일정 기간안에 행정소송 스케줄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경우에 따라 대면 소송 대신 전화 소송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 청구인은 증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모든 증인은 행정소송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주 본인이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UIAB 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지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직접 변호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행정소송에 변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리인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각행정소송의 당사자입니다.

어떤 증인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직접증인, 즉, **본인이 직접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을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 간접증인, 즉, 다른 사람에 의해 들은 이야기(소문) 보다 더 중요합니다. 직접증인은 행정 소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직접증인과 간접증인 모두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판사가 둘 모두를 고려하겠지만 직접증인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청구인의 직접증인이 없다면 상대방의 직접증인이 신청인의 증거보다 더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집니다. 행정소송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접증인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 연기나 직접증인이 전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행정소송에 참석한 이가 행정소송 시작시 행정판사에게 알려야합니다. 직접증인이 참석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행정판사가 직접증인의 전화 참석을 허가할 것입니다.

예시 1: 인사팀장이 공장 관리인의 구두보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공장 관리인은 직접증인**이 됩니다. 인사팀장은 공장 관리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증인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시 2: 예시 1 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사업체가 행정소송날까지 고객 수요에 따라 생산 물량을 맞추기위해 공장 관리인이 관련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면, 공장 관리인이 전화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행정판사는 행정소송의 연기 대신 직접증인의 전화 참석을 허가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청구인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행정판사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소송 관련 어떠한 추가 증인이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청구인은 행정소송 관련 파일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나 행정소송 관련 문의사항은, UIAB 의 행정판사부 1-877-880-3322 로 연락바랍니다.

UIAB 홈페이지 http://uiab.ny.gov 에서 실업급여법 관련 노동법 18 조 및 UIAB 규칙을 검토할 수 있고 청구인과 비슷한 행정소송 판례를 "판례 검색" 기능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홈페이지 http://labor.ny.gov 에서 비즈니스 관련 정보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연기 또는 불참할 수 있습니까?

연방법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행정소송은 일정한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상관없이 당사자들은 첫 행정소송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이미 정해진 소송 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첫 행정소송 기일이 휴정(연기)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첫 행정소송 후, 추후 기일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행정판사에 의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참석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행정판사에게 참석할 수 없는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주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행정소송 공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정소송과 관련된 서신에는 공지에 적시된 소송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불참한 경우

행정소송 청구인(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이 기각된 청구인)이 불참한 경우 기존 결정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불참한 청구인이 다시 결정에 항소하고자 한다면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신청은 불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심 여부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재심 신청인은 관련 재판에 참석하여 불참원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상대방이 불참한 경우

행정소송 상대방이 불참한 경우, 행정소송 청구인은 상대방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불참한 상대방이 결정에 항소하고자 한다면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신청은 불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심 여부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재심 신청인은 관련 재판에 참석하여 불참원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방법

재심신청 관련 설명은 행정소송 판결문 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심신청시 신청인은 추후 45 일동안 참석 불가한 날짜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집행인은 최대한 신청인의 참석 불가 날짜들을 피해 재심관련 심리 기일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재심신청 후, 재심관련 심리 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신청인은 기존 행정소송의 불참 사유에 대한 직접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판사는 기존 행정소송에 합당한 불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재심을 허가할 것입니다. 합당한 불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 1. 신청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긴급상황이나 중대한 사유
- 2.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 3. 신청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유로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었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4. 행정소송 기일이 종교 관련 기념일과 겹친 경우
- 5. 심각한 기상상황의 경우

행정판사가 불참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시 재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재심신청의 제약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소송에 참석을 해야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불참하여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관련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재심관련 심리에 불참하여 재재심을 신청한다면 재재심 관련 심리는 자동적으로 열리진 않을 것입니다. 재재심 신청은 재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재심사유를 검토하여 (a) 기존 불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 또는 (b) 재심위원회의 재량으로 불참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재심을 허가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면 참석을 해야 합니까?

행정소송이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대면 참석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대면 참석이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참석이 어렵다면 행정판사부에 사유가 생긴 즉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행정소송에 전화 참석이 가능한지 또는 다음으로 연기될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소송은 어디서 열립니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행정소송에 무엇을 지참하거나 누구와 함께 참석해야 합니까?

직접증인과 함께 참석하고 노동부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 그 외에 소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 예를 들어, 서면으로 작성된 내부 규정이나 수칙, 계약서, 서신, 이메일, 월급지급서, 중재 결정문, 경고, 조사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특정한 증거에 대한 공지를 받았다면 그 증거 또한 지참하여야 합니다. 상대측을 위해 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전화로 진행되는 소송시 사전에 다른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으로 상대방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행정판사에게 관련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판사에게 이미 제출된 서류도 증거 채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검토되지 않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소송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관련성은 행정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시 불이행 – 주문 이행을 위한 2014 년 1 월 15 일 오전 11 시 기계 작동 지시 불이행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업장에 게시된 일일 주문량 서면 기록은 소송과 관련 있는 서류입니다. 관련 직원의 4 개월전 주문 확인 미시행에 대한 관리자의 메모는 소송과 관련 없는 서류입니다. 6 개월전 관련 직원의 기계 미작동으로 인한 주문제작 차질에 대한 공장 관리자의 증언은 이 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6 개월전의 일은 근무 태도 문제이지 지시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했듯 첫 소송 기일은 소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전에 예정된 다른 소송에 참석해야 하고 관련이유를 사전에 법원에 통지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추후 소송 기일은 다른 이유로 연기가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증인, 관련 서류 및 증거가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사전에법원에 필요한 이유와 준비 시간 부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행정판사 권한으로 관련소송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직접 참석하여 (첫 소송이나추후 소송 모두 해당)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행정판사 재량으로 증인이나 증거가 준비될 때 재심을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장

소송인의 관리하에 없는 증인, 관련 서류 및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 직접 참석하여 행정판사에게 법적으로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을 요청하십시오.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행정판사가 그 날 가능한 증언이나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판사가 소환장을 허가한다면 관련 증거가 제출될 수 있도록 소송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인은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증거의 위치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지만 증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송에서 행정판사에게 증인의 전화 참석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청구인 모두 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영어를 읽고, 말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판사실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IAB 에서 통역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역 요청은 소송 전에 해야 합니다.

장애 관련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소송인이나 증인이 장애가 있다면 소송 참석을 위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관련 주임 행정판사나 선임 행정판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주임 행정판사나 선임 행정판사의 이름은 소송 공지 상단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정판사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에서 저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행정소송 시. 행정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a. 모두 발언을 통해 참석한 인원, 소송 진행 관련 내용 및 쟁점 그리고 권리에 대한 설명
- b. 선서 후 증언 채택
- c. 소송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 관련 질의
- d. 반대심문 승인 및 증인 심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송측 지도
- e. 증언 및 서류 증거 채택 결정
- f. 관련 자료 및 증인에 대한 소환장 발부 결정
- g. 사전 제출된 서류 증거 채택 결정
- h. 증거로 채택될 서류 검토 및 의견개시 허용
- i. 마무리 발언 허용

모든 증언은 녹음될 것입니다.

소송 중, 행정판사는 결정 공지나 반박문에 없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고려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고려되기 전에 행정판사는 그 새로운 사실관계를 고려해야하는 적합한 근거를 찾아서 소송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를 위해 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시, 소송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고용 조건과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 및 증인 요청
- b. 변호사 및 대리인 선임
- c. 서류, 기록 등 증거 제출 및 행정판사에 기 제출된 서류 증거채택 요청
- d. 행정판사에 증거 및 증인 소환 요청
- e. 소송인, 소송인의 증인, 그리고 노동부의 증인에 대한 심문 (반대심문)
- f. 증인 심문이 어려울 시 행정판사에 지도 요청
- g. 이해하지 못한 질의 설명 요청

- h. 반대 증거 설명 및 반박
- i. 적합한 사유시 소송 연기 (또는 휴정) 요청
- j. 마무리 발언을 통한 소송인의 실업 급여 비해당 사유 설명 또는 심리 시 제시하지 못한 논점 설명. 실업 급여 비용 부담에 대한 소송시 비용 부담의 부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 서류를 제출했다면, 행정판사가 소송 관련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련된 서류만 증거로 채택될 것입니다. 상대 소송인이나 노동부에서 심리 중 나온 구두 발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행정판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나 청구인 모두 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행정소송 후 최대한 빨리 행정판사가 판결문을 당신에게 송부할 것입니다. 판결문에 행정판사는 증거에 기반한 사실 관계를 적시할 것입니다. 2 주내로 판결문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판사실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노동부의 전화문의 센터 (TCC) 1-888-209-8124로 전화로 설명을 요청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www.labor.ny.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있는 사업주는 https://applications.labor.ny.gov 웹사이트에서 NY.GOV ID 로 로그인하시고 "메시지"를 클릭해서 노동부로 보안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정판사나 항소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초과 지급받았다고 판결한다면 당신은 실업급여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발송된 모든 공지사항을 주의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판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에 참석하셨다면, 당신은 실업급여 항소위원회에 행정판사의 판결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관련 안내는 행정판사 판결문 뒷면에 있습니다. 항소요청은 행정판사 판결일로부터 20 일이내로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나 노동부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행정판사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요청은 참석하지 못한 행정소송 직후 소송담당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에 대한 내용은 "행정소송을 연기 또는 불참할 수 있습니까?"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판결에 항소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항소요청 후, 항소 절차 관련, 특히, 소송 기록 검토 및 판결 부당성을 항소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부당성 주장을 서면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인이나 노동부 또한 관련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행정판사의 결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항소위원회는 소송 기록에 포함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주로 서면으로 결정문을 발표하지만 추가 심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심리가 열린다면 당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참석하셔야 합니다.

청구인 승소 판결을 내린 행정판사의 결정을 파기한다면, 당신은 실업급여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발송된 모든 공지사항을 주의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판사가 나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면, 상대측이 항소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승소 판결을 청구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또한 행정판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 결정 후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까?

항소위원회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면, 당신은 New York Supreme Court, Appellate Division, Third Department 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관련 안내는 항소위원회 판결문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uiab.ny.gov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십시오.

실업급여 행정소송 관련 5 가지 팁: 직접 변호

실업급여 행정소송 통지를 받았다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거나 직접 변호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u>소송 날짜와 시간 참고</u> 2020 년 5 월 이후로 모든 소송은 전화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해진 소송 날짜와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소송은 보통 한시간 반 (1.5 시간) 정도 걸리지만 더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2. <u>소송 준비</u> 노동부에서 보낸 모든 서류와 공지를 검토하십시오. 노동부 파일로도 불리는 **사건파일**에는 노동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심리 전에 관련 파일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날짜라든지 마지막 근무 날짜 등 특정한 날을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 중 이러한 날짜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3. <u>증거 및 증인 확보</u> 심리에 제출할 증거 또는 참석할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심리 3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리 시작 시 행정판사가 증인 신청여부를 물어보면 증인의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판사는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지는 행정판사가 판단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은행 명세서, 또는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 4. 심리 개요 및 에티켓 행정판사가 정해진 심리 시간에 전화를 할 것입니다. 주변 소음이 없고 전화 연결에 문제가 없는 곳에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판사는, 특히 당신이 직접 변호를 하는 경우라면, 심리 시작 전 심리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행정판사는 공정하지만 당신이 진행상황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행정판사는 당신의 고용 기록, 실업급여 신청 내역,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간단한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심리는 녹음되니, 행정판사나 상대의 말을 자르지 마십시오: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만 발언하십시오. 행정판사를 부를 때는 "판사님" 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행정판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 5. <u>심리 후</u> 심리 후 1-2 주 이내로 행정판사가 판결문을 통지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상황에 대해 판결문을 잘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관련 안내는 **판결 공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ink to Video: How to Prepare for a Hearing

(on UIAB Website-Video by ALJ Nicole Beason)

링크: 행정소송 준비하는 방법

(UIAB 웹사이트 - 행정판사 Nicole Beason)

https://uiappeals.ny.gov/prepare-your-hearing-o

<u>Terms Used in Unemployment Insurance Hearings and Appeals</u>

실업 급여 행정소송 및 항소와 관련된 용어

As adapted by the UIAB's document AB 10, dated 11/18 UIAB 의 AB 10 문서 기준, 11/18 **휴정** (Adjournment): 심리가 정해진 시간에 끝나지 못해 다른 날로 미루어짐

행정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 실업급여 행정소송을 주재하는 사람. 행정판사는 기존 실업급여 지급 관련 결정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또는 변경할지 결정함.

확정 (Affirmed): 실업급여 항소위원회에서 행정판사의 결정을 결론지음.

항소 (Appeal): 행정판사 결정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실업급여 항소위원회에 한가지 이상 문제 검토 요청. 항소 결정은 실업급여 항소위원회의 한 명 이상의 위원에 의해 결정됨.

항소부 (Appellate Division): 뉴욕주 법원 체계 중 하나. 실업급여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항소부에 재항소 할 수 있음. 뉴욕에는 항소부가 4개 있음. 각 다른 지역을 담당함 (각 "Department"라고 불림). 실업급여 항소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는 Third Department 에서 담당함.

출석 (Appearance): 소송에 참석. 소송 당사자들은 증언하거나, 상대 증인을 심문하거나, 증거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거나,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음.

재심신청 (Application to Reopen): 새로운 소송을 요청하거나 실업급여 항소위원회 결정에 대한 검토 요청.

중재 (Arbitration): 두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 중재자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중재 담당자가 결정을 내림. 행정판사나 항소위원회 결정에 중재 결정 또한 고려됨.

청구 (Claim):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절차. 전화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청구인 (Claimant): 실업 후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

마무리 발언 (Closing Statement): 심리 후 마지막에 각 당사자들의 발언. 각자 주장의 근거를 발언함.

부수적 금반언 (Collateral Estoppel): 중재자의 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인정. 어떤 경우에 행정판사는 반드시 중재자의 사실 관계 확인을 인정하여야만 함.

노동부 장관 (Commissioner of

Labor): 노동부의 수장. 실업급여법 등 노동법의 올바른 적용을 감독함. 노동부 장관은 뉴욕 주지사에 의해 임명됨.

노동부 대표 대리인 (Commissioner of Labor Representative): 노동부 장관을 대리하여 소송에 참석하는 노동부 직원. 증거 제출, 증인 반대심문,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기존 노동부 결정이 적합함을 주장함.

반대심문 (Cross-Examination): 상대측 증인에 대한 심문. 예를 들어, 청구인이 고용주나 노동부 측 증인을 심문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청구인이나 노동부 측 증인을 심문하는 경우. 노동부측 대리인은 청구인 및 상대측과 그들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음.

불출석 (Default): 소송 청구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인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소송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판결문 (Decision): 심리 후 소송판사에 의해 또는 항소심후 항소위원회 위원에 의해 공지된 법적 문서. 판결문은 기존 노동부의 결정이 유지될지, 기각될지 변경될지 기재. 판결문은 또한 소송

절차, 사실 관계 및 사실과 법 판단을 기재함.

직접 증언 (Direct Testimony): 행정판사나 소송인 대리인의 심문에 대한 소송인이나 증인의 답변.

정당한 절차 (Due Process): 공정한 소송을 위한 절차. 미국 개정헌법 4조와 5조에 의해 소송인들의 권리를 보호함.

증거 (Evidence): 소송에 제출된 증언 또는 첨부 자료. 행정판사가 사실로 인정한 증거는 결정에 고려됨.

첨부자료 (Exhibit): 서류, 미디어, 또는 다른 형식의 증거.

고용주 (Employer): 실업급여 청구인이 근무했던 기업체, 2인 이상의 파트너쉽, 소상공인, 개인기업, 또는 사업소.

심리 (Hearing): 행정판사에게 증거들이 제출되는 소송절차. 소송 당사자들은 행정판사, 각자의 대리인 및 상대측에 의해 심문을 받음. 증인 또한 상대측에 의해 심문을 받을 수 있음. 행정판사는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함. 행정판사는 기존 노동부의 결정이 유지될지, 기각될지, 변경될지 결정함.

소문 (Hearsay): 누군가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은 증거가 아닌 읽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

기존 결정 (Initial Determination): 특정한 법적 문제나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노동부의 결정문.

노동부 담당 직원 (Labor Services Representative): 노동부의 실업급여지급 결정을 내리는 사람. 청구인 또는고용주와의 전화 인터뷰 또는 이메일내용을 소송에서 증언할 수 있음.

변경 (Modified): 기존 결정의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에 대한 행정판사 결정. 또는 행정판사 결정의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에 대한 항소위원회 결정.

기각 (Overruled): 기존 결정의 잘못 및 효력 정지에 대한 행정판사의 결정.

당사자 (Party): 소송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이나 고용주. 실업급여 소송에는 청구인, 고용주, 노동부 등 세명의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음.

반송 (Remand): 실업급여 항소위원회에서 행정판사에 의한 재심 결정. 대리인 (Representative): 소송 중 당사자 대신 행정판사에 답변하고 증인을 심문하는 사람.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고용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동부를 대리하는 회사를 선임할 수 있음. 또는 고용주는 인사과 직원 같은 내부 직원이 대리할 수 있음.

파기환송 (Reversed): 행정판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업급여 항소위원회 판결.

증인격리 (Sequester): 증인 격리.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시, 증언하는 증인만 재판정에 있을 수 있음. 다른 증인은 증언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서로의 증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증인을 격리시킴.

소환장 (Subpoena): 소송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사업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적 문서. 특정 개인에게 증언을 요청할 수도 있음. 소환장은 행정판사가 서명함.

인용 (Sustained): 기존 결정의 적합성에 대한 행정판사의 판결.

증언 (Testimony): 선서 후 진행된 소송 당사자나 증인의 주장.

실업급여 항소위원회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Board): 뉴욕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독립적인 위원회. 행정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결정을 내림.

증인 (Witness): 소송에서 증언한 당사자가 아닌 개인.